

수업조교에 관한 내규

제정일자 : 2008. 9. 1.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 수업조교와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내규가 규정한 업무의 전반적인 운영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제3조 (수업조교의 자격) 수업조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

- ① 본교 대학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학생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② 학기 시작 후 둘째 주에 수업조교지원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 자
- ③ 본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자

제4조 (수업조교의 배치) 수업조교는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.

- ① 수강신청변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수강인원이 100명 초과된 과목
- ② 총장이 지정한 경우
- ③ 보직자나 기타 사유로 개인조교가 있는 경우는 제외
- ④ 과밀학급이 중복된 경우 1인 배정
- ⑤ 팀티칭의 경우는 제외

제5조 (수업조교의 활동) 수업조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담당한다.‘

- ① 학부학생들의 학습지도
- ② 강의실에서의 출결점검
- ③ 과제물 정리
- ④ 시험 기간 중 시험지복사, 시험감독등의 일에서 담당교수를 보조
- ⑤ 기타 관련활동

제6조 (수업조교의 활동수칙) 수업조교의 활동수칙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수업조교는 주 1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수업조교는 매주 월요일, 지난주간 근무상황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해야한다.
-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정받은 과목의 수업시간에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교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④ 수업조교의 근무기간은 학기당 16주로 하며,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- ① (내규의 개폐) 이 내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및 폐지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